

| | | |
|----------|------|--|
| 의안 번호 | 2567 |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24.(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24.(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4. 7.(화)

2. 제안설명 요지 (보건소장 이현주)

가. 제안이유

-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지원 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방접종 지원 종류에 백일해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 18세 청소년 포함
(안 제3조제1항제1호라목)
-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규정(안 제3조제1항제3호)
- 백일해 등 예방접종 지원 횟수 규정(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다.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1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주)

가. 검토사항

1) 제정배경

-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지원 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내용검토

가) 예방접종 지원 및 종류에 백일해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18종에 포함된 백일해 항목 추가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 18세 청소년 포함(안 제3조제1항제1호라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다)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규정(안 제3조제1항제3호)

- 백일해 접종에 대한 지원 대상자 명확화
 -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

라) 백일해 등 예방접종 지원 횟수 규정(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횟수 근거 마련
 - 임신부: 매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 배우자: 최근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

나.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지원 횟수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제1항제3호 예방접종 지원 종류에 백일해 항목을 추가하고,
 - 안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 18세 청소년을 포함하였으며
 - 안 제3조제1항제3호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백일해 등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명시함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수행 내용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업무 수행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의 규정에 부합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내용 중 백일해와 인플루엔자 등을 국가예방접종 적용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제1항 내용중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부합함.
- 또한,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백일해, 인플루엔자 등을 국가예방접종 적용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예방접종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를 별표1에 백일해 접종대상은 12세이하 모든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13세 영유아 및 어린이,

임신부로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위 별표1에 해당되지 않은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에 임신부 부부 추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18세 청소년을 추가로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 되는 점은 없으나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백일해 접종 예산이 조례 개정없이 편성되어 근거 마련이 지연되는 등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